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3. . . (제 회)	

민방위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가. 대부분 읍·면·동 경보 발령 담당자는 민원 업무 등을 겸하고 있어 인력 부족에 따른 신속한 민방위 경보 전달이 어려운 실정

- 또한, 접경지역 읍·면·동과 지역 군부대간 민방공 경보 발령 훈련 시 드러난 민방위 경보 발령체계에 대해 개선·보완 필요

※ 관련 근거: 민방위 경보 발령·전달 규정 제21조(교육훈련 등)에 따라 매월 1회 실시

- 시·군단급 부대는 유사시 적절한 판단을 할 수 있을 만큼 정보가 풍부하고, 시·도도 軍의 경보발령 요청에 따라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발령 가능

나. 국제 표준화를 고려한 민방위 표지장의 개편에 따른 비상대피시설 안내표지판 및 유도표지판 형태, 설치 방법 등 개정 필요

-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증가함에 따라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외국어 병기 필요

3. 주요내용

가. 시·도의 민방위 경보 발령 권한 확대(제55조 제3항)

- 접경지역 읍·면·동에 민방위 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관할구역 읍·면·동장, 시·군·구청장뿐만 아니라 시·도지사도 민방위 경보를 발령할 수 있도록 권한 확대

나. 비상대피시설 안내표지판 및 유도표지판 형태, 설치 방법 등 개정(별표 1)

- 민방위 표지장 변경에 따라 안내·유도 표지판 內 도안 변경

- 국내 거주 외국인 증가에 따라 외국어*(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병기

※ 영어, 중국어, 일본어를 기본으로 하되, 지역 특성에 맞게 다른 외국어도 추가 적용 가능

4. 주요 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생 략

나. 예산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관계부처 등과 협의 예정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6. 00. ~ 7.00) 예정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1호에서 제3호를 삭제한다.

제55조제3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을 “관할구역에 민방위 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으로 하고, 제1호에서 제3호까지는 삭제한다.

별표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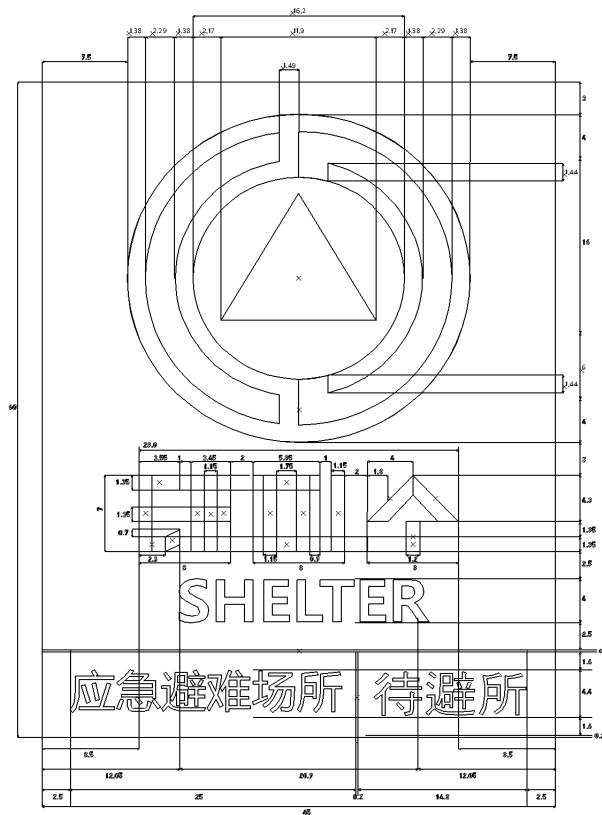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이전에 별표 1에 따라 설치된 비상대피시설의 안내표지판 및 유도표지판은 신규 또는 교체 설치하는 경우까지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별표 1] 비상대피시설의 안내표지판 및 유도표지판

1. 비상대피시설 안내표지판

가. 안내표지판 형태

1) 도안



2) 판의 재질: 철판 또는 아크릴(가로 45cm, 세로 60cm)

3) 색깔

가) 바탕: 빨간색

나) 삼각: 파란색

다) 원: 주황색

라) 민방위 표지장 영어 약자: 녹색

마) 테두리선(안쪽, 바깥쪽): 흰색

바) 글씨 표시: 흰색 야광

나. 설치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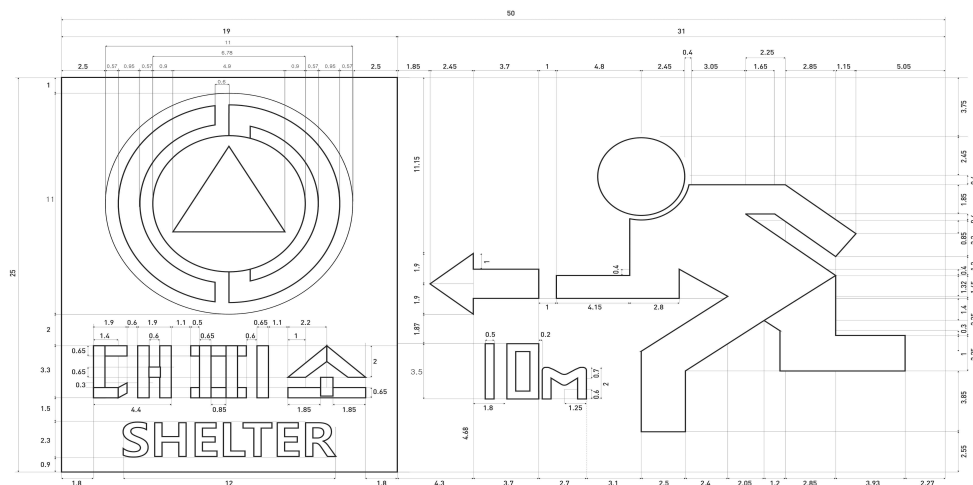
- 1) 받침대를 세울 경우에는 지상에서 60cm 높이에 설치 또는 부착한다.
- 2) 표지판의 크기는 표준규격을 원칙으로 하되, 건물의 특수성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다. 외국어 병행 표기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를 기본으로 하되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다른 외국어도 추가하여 적용할 수 있다.

2. 비상대피시설 유도표지판

가. 유도표지판 형태

1) 도안



2) 판의 재질: 철판 또는 아크릴(가로 50cm, 세로 25cm)

3) 색깔

가) 바탕: 흰색

나) 글씨(대피소, SHELTER)와 방향표시를 제외한 안내표지판(이하 "안내표지 모형"이라 한다): 비상대피시설 안내표지판과 동일

다) 안내표지 모형 아래에 적는 글씨(대피소, SHELTER): 흰색 야광

라) 대피유도 모형(사람 모양)과 글씨(10m) 및 방향표시: 파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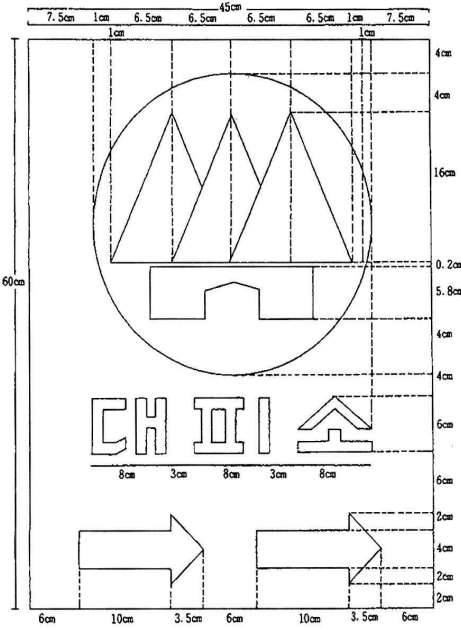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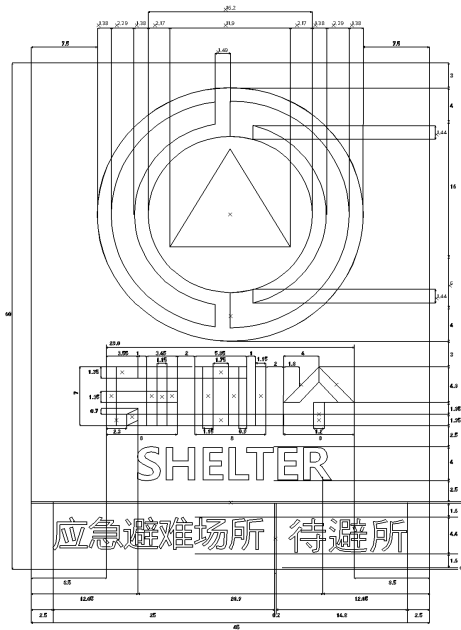
나. 설치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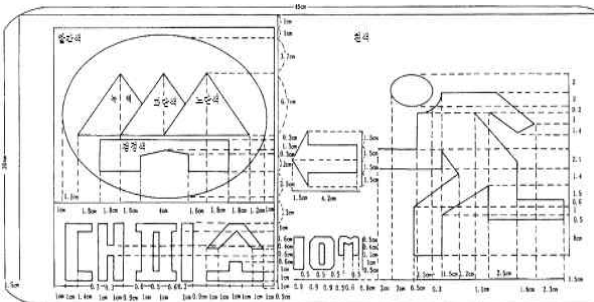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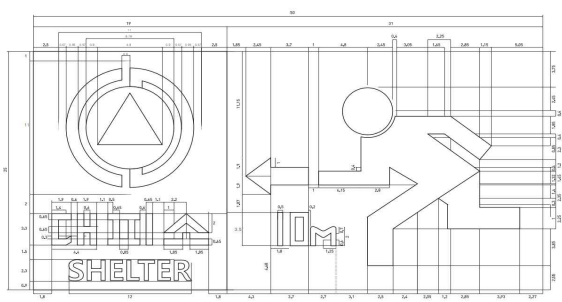
- 1) 유도거리는 설치위치 또는 부착위치에 따라 10m에서 50m 이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 2) 받침대를 세울 경우에는 지상에서 2m 높이에 설치 또는 부착한다.
- 3) 화살표는 비상대피시설을 가리키되, 설치위치 또는 부착위치에 따라 안내표지 모형과 대피유도 모형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 4) 표지판의 크기는 표준규격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의 특수성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 5) 바탕을 제외한 부분은 야광도료로 처리한다.

다. 외국어 병행 표기는 영어를 기본으로 하되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다른 외국어도 추가하여 적용할 수 있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5조(민방위 경보) ③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접경지역(이하 “접경지역”이라 한다)의 읍장·면장·동장은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방위 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u> 1. <u>시·도지사 :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u> 2. <u>시장·군수·구청장 : 해당 시·군·구에서만 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u> 3. <u>접경지역의 읍장·면장·동장 : 해당 읍·면·동에서만 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u>	제55조(민방위 경보) ③ ----- ----- ----- ----- --- <u>관할구역에 민방위 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u> ----- -----. 1.~3. <삭제>

현행	개정안
[별표1] 비상대피시설의 안내표지판 및 유도표지판 1. 비상대피시설 안내표지판 가. 안내표지판 형태 1) 도안  2) 판의 재질: 철판 또는 아크릴 3) 색깔 가) 바탕: 빨간색 나) 원: 흰색 다) 삼각: 오른쪽으로부터 노란색·파란색 및 녹색 라) 대피 부호: 검정색 <신 설> <신 설> 마) 글씨 및 방향 표시: 흰색 야광	[별표1] 비상대피시설의 안내표지판 및 유도표지판 1. 비상대피시설 안내표지판 가. 안내표지판 형태 1) 도안  2) 판의 재질: ----- (가로 45cm, 세로 60cm) 3) 색깔 가) (현행과 같음) 나) 삼각: 파란색 다) 원: 주황색 <삭 제> 라) 민방위 표지장 영어 약자: 녹색 마) 테두리선(안쪽, 바깥쪽): 흰색 바) 글씨 표시: 흰색 야광

현행	개정안
나. 설치방법 1) 받침대를 세울 경우에는 지상에서 60cm 높이에 설치 또는 부착한다. 2) 화살표는 비상대피시설 입구를 가리키도록 하되, 안내표지판을 비상대피시설 출입문에 설치 또는 부착하는 경우에는 방향 표시를 삭제한다. 3) 표지판의 크기는 표준규격을 원칙으로 하되, 건물의 특수성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신 설>	나. 설치방법 1) (현행과 같음) <삭 제> 2) 현행 3)과 같음
다. 외국어 병행 표기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를 기본으로 하되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다른 외국어도 추가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 외국어 병행 표기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를 기본으로 하되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다른 외국어도 추가하여 적용할 수 있다.
2. 비상대피시설 유도표지판 가. 유도표지판 형태 1) 도안	2. 비상대피시설 유도표지판 가. 유도표지판 형태 1) 도안
	
2) 판의 재질: 철판 또는 아크릴	2) 판의 재질: ----- (가로 50cm, 세로 25cm)

현행	개정안
3) 색깔 가) 바탕: 흰색 나) 글씨(<u>대피소</u>)와 방향표시를 제외한 안내표지판(이하 "안내표지 모형"이라 한다): 비상대피시설 안내표지판과 동일 다) 안내표지 모형 아래에 적는 글씨(<u>대피소</u>): 노란색 라) 대피유도 모형(사람 모양)과 글씨(10m) 및 방향표시: 파란색 나. 설치방법 1) 유도거리는 설치위치 또는 부착 위치에 따라 10m에서 50m 이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2) 받침대를 세울 경우에는 지상에서 2m 높이에 설치 또는 부착한다. 3) 화살표는 비상대피시설을 가리키되, 설치위치 또는 부착 위치에 따라 안내표지 모형과 대피유도 모형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4) 표지판의 크기는 표준규격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의 특수성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5) 바탕을 제외한 부분은 야광도로 처리한다.	3) 색깔 가) 바탕: (현행과 같음) 나) --(---, <u>SHELTER</u>)----- ----- ----- ----- -- 다) ----- ——(—, <u>SHELTER</u>): <u>흰색야광</u> 라) (현행과 같음) 나. 설치방법 1) ~ 5)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신설> 부칙 <u><신설></u> <u><신설></u>	다. <u>외국어 병행 표기는 영어를 기본으로 하되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다른 외국어도 추가하여 적용할 수 있다.</u> 부칙 <u>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u> <u>제2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 이전에 별표 1에 따라 설치된 비상대피시설의 안내표지판 및 유도표지판은 신규 또는 교체 설치하는 경우까지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u>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민방위과	
연 락 처	(044) 205 - 4367